

#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

의안 번호	141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11. 10.  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기금운용 개요
  - 설치년도: 2007. 1. 1.
  - 설치목적: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
  - 설치근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, 노인복지법 제4조
- 기금운용계획 총괄 (단위: 천원)

수입 계획					지출 계획			
계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예치금 회 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비용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예치금
2,053,154	5,000	2,002,923	25,231	20,000	2,053,154	28,054	100,000	1,925,100

- 기금조성규모 (단위 : 천원)

2017년도 말 조성액 ㉑	2018년도 조성계획		증감 ㉒=㉑-㉓	2018년도 말 조성액 ㉔=㉒+㉑
	수입 ㉑	지출 ㉓		
2,002,923	50,231	128,054	△77,823	1,925,100

## 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

## 4.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: 따로 붙임